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72
----------	-------

발의연월일 : 2023. 3. 31.

발의자 : 최종윤 · 한준호 · 김영진

이인영 · 조오섭 · 조승래

정일영 · 김종민 · 윤건영

인재근 · 김승남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위원회 · 등급판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심사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고시에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구의 위상과 정책적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
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안 제55조 및 제56
조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제2호의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5년 이상의 장기요양기관 업무경력이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위원의 임기”를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장기요양기관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4.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5.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계 공무

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를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장기요양기관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법학,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3조의2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53조의2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장기요양기관 업무경력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53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로 본다.

②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u>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u> <u>2.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u> <u>3.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u> <p>②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제2호의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5년 이상의 장기요양기관 업무경력이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이 포</p>

	<p><u>함되어야 한다.</u></p> <p><u>③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급여</u> <u>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u> <u>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한다.</u></p> <p>제55조(심사청구) ① ~ ③ (생략) <u><신 설></u></p> <p><u><신 설></u></p> <p><u>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u>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u><u>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u><u>3. 장기요양기관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u>
--	--

<신 설>

④ 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56조(재심사청구) ① (생 약)

②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 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

4.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5.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심사 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제56조(재심사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 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③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p><u>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u> <u>이 풍부한 자</u>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u>하는 자</u>----- ----- -----. ----- ----- -----.</p>
<p><u><신 설></u></p>	<p><u>1.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u> 또는 <u>고위공무원단 소속</u> <u>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u></p>
<p><u><신 설></u></p>	<p><u>2. 판사 · 검사</u> 또는 <u>변호사의</u> <u>자격이 있는 자</u></p>
<p><u><신 설></u></p>	<p><u>3.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u> <u>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u></p>
<p><u><신 설></u></p>	<p><u>4. 장기요양기관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u></p>
<p><u><신 설></u></p>	<p><u>5. 그 밖에 법학, 사회보험 또 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u> <u>이 풍부한 자</u></p>
<p><u><신 설></u></p>	<p><u>④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u> <u>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p>
<p><u>④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위원의 임기</u>, 그 밖에 필요한</p>	<p><u>⑤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u>-----</p>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